

유흡착재(주사위형) 사양서

□ **물 품 명** : 유흡착재(주사위형)

□ **규 격** : 10kg/box

□ **사용범위** : 금속가공 공장 기계라인이나 유압작동유 및 기름이 흐를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며, 기름종류에 관계없이 10배이상 흡유할수 있는 고분자 흡착재입니다.

1cmx1cmx1cm 규격으로 좁은틈이나 틈에 사용이 용이합니다.

○ 포장단위(1box 기준) : 주사위형 유흡착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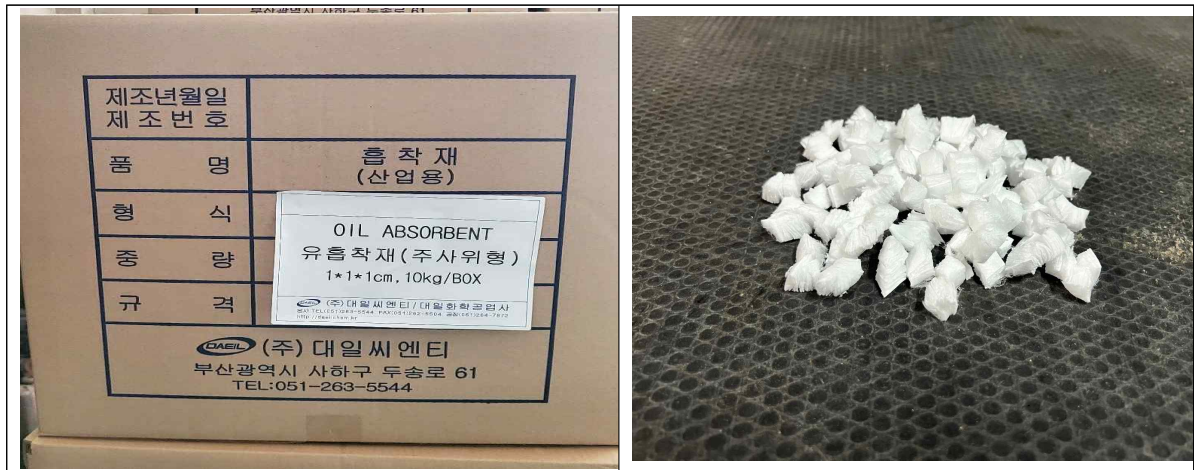
가로 1cm × 세로1cm x 높이 1cm

총 10KG/BOX

1. 주사위형 유흡착재

- 발수처리되어 물은 흡수하지 않으며 각종오일,윤활유,냉각액,절삭유 등 흡착제거 가능합니다.
- 무독성,무공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되었기 때문에 소각시 전혀 공해가 발생치 않으며,사업장 청결유지에 도움이 된다

2. 제품사진



□ 특수조건(제품의 포장)

- 모든 단위 포장물은 패럿에 적재 후, 주위를 투명 비닐 랩(20미크런 이상 처리 포장한다.
- 패럿 규격은 가로 1100mm, 세로 1100mm, 높이 120mm (차 입구 90mm이상)이고, 패럿을 포함한 적재물의 총 부피가 가로 1100mm, 세로 1100mm, 높이 2400mm를 넘지 않으며, 패럿 밖으로 단위 포장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패럿에 적재된 제품은 장기간 보관하여도 형태를 유지(박스 구겨짐 방지)하여야 하며, 가능한 많은 물량을 적재하여 남는 공간을 최소화 하되, 제품의 형태별, 제조방식별로 적재 크기 및 형태를 같게 하여야 한다.
- 패럿 포장물은 패럿 위에 1400mm × 1400mm 넓이의 두께0.06mm이상 비닐 또는 랩을 깔아 하부로부터의 습기 차단 조치한 다음, 종이박스를 적재한 후 아래에 칸 비닐 또는 랩 둘레를 위쪽으로 접은 상태에서 패럿과 적재물이 고정될 수 있도록 패럿 하단을 포함하여 패럿 하단부터 종이박스 맨 윗면까지 둘레를 4겹 이상 랩핑 하여야 하며, 가장 상층 박스포장 위에 1400mm × 1400mm 넓이의 두께 0.06mm이상 비닐 또는 랩을 올리고 둘레를 아래방향으로 접은 상태에서 다시 윗면을 2겹 이상 랩 처리하여 야적 시에도 눈, 비, 먼지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, 바람 및 지게차와 화물차 운반시에도 쓰러짐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및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
- 패럿은 4방차입 평면 수출입용 재생 플라스틱 신폼 패럿으로 적재물이 이동 및 보관되는 제반 조건과 1톤 이상의 하중을 장기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.
- 단위포장은 외부에서 품명, 규격, 형식, 제조일자, 제작사 등의 표시와 함께 아래 문구가 인쇄되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.



본 제품은 해양경찰청 방제자재 입니다.

※ 위치 및 크기

- 문 구 : 4면 상부 좌측에 30cm×5cm로 보색 인쇄
- 마 크 : 문구 좌측에 적당한 크기로 보색 인쇄(발주처와 협의)

□ 특수조건(납품 등 기타조건)

-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로 하며,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1년으로 한다.
- 납품 시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며, 사양서와 상이한 결함 발견 시 불합격 판정한다.
- 납품장소와 수량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각 해양경찰

서로 한다.

연번	관서명	수량	주소	연락처	담당자
1	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	20박스 (200kg)	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	041- 402-2297	최희정
2	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	20박스 (200kg)	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-13	041- 950-2591	임창훈
3	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	30박스 (300kg)	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-27	031- 8046-2591	최초로
4	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	40박스 (400kg)	인천시 연수구 옥골로 69	032- 650-2591	정한기

※ **납품은 패럿 포장상태로 하되, 방제장고 등의 비축 시 창고면적 등을 감안하여 운반 및 보관**

○ **납품업자는 물품의 포장 전에 제품의 종류, 단위포장방법, 패럿 포장방법 등을 구입처에 알려야 한다.**

※ **샘플검사로 인해 포장이 파손된 물량의 복구는 납품업자가 책임짐**

○ **모든 제품은 납품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제조된 최신품이어야 하며, 형태별·제조방식별로 동일 제조사, 동일 규격, 동일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한다.**

※ **제조일자 확인가능 서류 및 해양오염방제 자재·약제 형식승인증서 및 검정합격증명서 제출**

○ **납품업자는 물품의 납품, 운반, 입고 등 제반사항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,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의 불량 또는 결함 발생시 동일 물품으로 교환하되, 이에 소요되는 경비 또한 납품업자 부담으로 한다.**

○ **납품업자는 제품의 비축기지 입고 전 발생한 물품의 망실, 파손 등과 운송도중 차량 손괴 및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든 민,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**

○ **납품업자는 이외 특이사항 및 문제점 발생시 지체 없이**

구입처에 연락하여 협의해야 한다.